

증평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규정 [2022. 11. 18]

훈령 제152호
일부개정 2022. 12. 29 훈령 제153호
(위원회 규정 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
「증평군 공무 국외여행 규정」 등
일부개정훈령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기능)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3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증평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(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처요령을 포함) 운영 및 참여
2.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
3.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활동
4.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활동
5.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하여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(이하 “회의”라 한다)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협의
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군수
2.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

③ 협의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괴산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
2. 증평지구대장
3. 증평소방서 대응총괄팀장
4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 위원”이라 한다)
가.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
나.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공공기관의 장

다.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

제6조(공동위원장의 직무)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.

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협의회의 운영) ① 회의는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된다.

〈개정 2022. 12. 29〉

제8조(운영세칙)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분과위원회)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부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12. 29 훈령 제153호, 위원회 규정 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

「증평군 공무 국외여행 규정」 등 일부개정훈령)

이 훈령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